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우선적 지원 〉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911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우선적 지원	2

I. 개요

1. 조은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91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은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20.

(3) 회 부 일 : 2026. 2.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필수 의료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구의 감소로 인한 낮은 수익성과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가 이어질 경우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우선적 지원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¹⁾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제17조(보조금 등) ① ----- ----- ----- ----- ----- -----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지닌 것으로 보임.

- 이는 인구감소 변화를 겪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통한 세입이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지역격차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됨²⁾.
- 2026년 3월 현재 지방의료원 총 36개소³⁾ 중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10개소임.

< 인구감소지역 및 해당지역 소재 지방의료원 현황 >

시·도	인구감소지역(시·군·구) (총 89지역)	인구감소지역(시·군·구) 소재 지방의료원(총 10개소)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대구의료원(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삼척의료원(삼척시) 영월의료원(영월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공주의료원(공주시)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남원의료원(남원시) 진안군의료원(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강진의료원(강진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안동의료원(안동시) 울진군의료원(울진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및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https://rhs.mohw.go.kr/>)를 바탕으로 작성

2)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인구 변화를 겪는 지자체는 사회복지분야의 재정 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체 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한 세입은 감소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지자체의 자치재정 악화와 지역 격차 심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제고 방안, 2020. 2.).

3)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등 분원 포함

□ 다만,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지방의료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방의료원에 대한 우선적인 재정 지원의 적절성은 위치한 지역 뿐만 아니라 경영현황, 타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 한 예로 지방의료원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 당기순 이익(흑자)을 기록한 지방의료원 7개소 중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이 3개소를 차지하며, 최근 3년 평균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지방의료원 8개소 중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은 3개소임 ([참고] 별첨).

□ 참고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⁵⁾ 및 「지방분권균형발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 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⑤ (생략)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와 의료

전법」 6) 등의 법률에서도 의료서비스·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소재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등 지원 관련 법률 적용 현황 >**

시·도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소재 지방의료원 (총 10개소)	인구감소지역법	공공보건의료법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의료취약지 (응급의료분야)	지역 책임의료기관	성장촉진지역
대구(1)	대구의료원(서구)		○	
인천(1)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옹진군)	○		
강원(2)	삼척의료원(삼척시)	○	○	○
	영월의료원(영월군)	○	○	○
충남(1)	공주의료원(공주시)	○	○	
전북(2)	남원의료원(남원시)	○	○	○
	진안군의료원(진안군)	○		○
전남(1)	강진의료원(강진군)	○		○
경북(2)	안동의료원(안동시)		○	○
	울진군의료원(울진군)	○		○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https://rhs.mohw.go.kr/>), 보건복지부 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를 바탕으로 작성

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심혈관·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인력, 의료서비스의 품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 자원의 개발·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한편, 동 개정안을 포함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에 있어 참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 지원 취지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
(동 개정안 포함)**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재정 지원 관련 주요 내용 (안 제17조)
2201148 (김원이의원)	'24.6.28.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가능
2207301 (박희승의원)	'25.1.7.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가능
2210602 (전종덕의원)	'25.5.26.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 가능
2216911 (조은희의원) ※ 동 개정안	'26.2.20.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국가가 우선하여 지원 가능

자료: 각 법안을 바탕으로 작성

다. 관계 기관 의견

- (충청북도) 지방의료원의 운영 여건은 단순 인구 규모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여부만을 기준으로 국가 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경우 지방의료원 간 형평성 문제 및 정책 효과 저하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유지 의견
- (충청남도·전남 강진의료원)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의무 규정 필요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인구감소지역 공공의료 기반 유지라는 정책 취지는 타당하나, 국가 지원은 지역 구분보다는 공공의료 기능 수행 정도, 의료취약성 등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중 검토 필요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를 일률적인 우선 기준으로 두기보다는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 정도, 지역 의료취약성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지방의료원 당기순이익손실(적자) 현황 (2020~2024회계연도 결산)
-------------	--

：흑자('24년, 3년평균, 5년평균에 대해 표기)

(단위: 백만원)

연번	시도	기관명 (인구감소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년평균 (‘22~’24)	5년평균 (‘20~’24)
1	서울	서울의료원	4,051	4,396	-26,889	-37,955	-19,203	-28,016	-15,120
2	부산	부산의료원	3,608	29,025	-3,686	-17,850	-17,948	-13,161	-1,370
3	대구	대구의료원*	4,482	22,476	13,482	-11,670	-10,408	-2,865	3,672
4	인천	인천의료원	13,712	20,461	6,317	-11,370	-6,851	-3,968	4,454
5	인천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139	-227	-327	-24	-220	-190	-132
6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1,923	9,636	2,626	-11,388	-4,502	-4,421	-341
7	경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2,315	2,705	-3,378	-9,273	-8,417	-7,023	-3,210
8	경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3,518	20,913	446	-10,037	-6,033	-5,208	1,761
9	경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4,962	25,005	10,072	-4,210	3,497	3,120	7,865
10	경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4,109	10,889	1,755	-10,991	-4,560	-4,599	240
11	경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1,239	10,406	1,701	-9,576	-5,962	-4,612	-438
12	경기	성남시의료원	-7,980	27,659	1,259	-23,701	4,966	-5,825	441
13	강원	강릉의료원	-876	10,410	2,070	-5,179	-1,634	-1,581	958
14	강원	속초의료원	-1,394	10,771	2,140	-6,168	-4,941	-2,990	82
15	강원	원주의료원	3,664	5,692	8,671	4,985	2,257	5,304	5,054
16	강원	삼척의료원*	224	5,397	-143	-4,401	226	-1,439	261
17	강원	영월의료원*	365	-2,892	124	-3,682	-1,323	-1,627	-1,482
18	충북	청주의료원	-2,234	6,914	-2,800	-15,473	-14,473	-10,915	-5,613
19	충북	충주의료원	-2,173	4,505	10,638	-11,273	-6,070	-2,235	-875
20	충남	천안의료원	-824	15,075	-215	-10,640	-6,952	-5,936	-711
21	충남	공주의료원*	-1,234	13,222	585	-8,494	-4,326	-4,078	-49
22	충남	서산의료원	-1,844	5,832	6,338	-6,784	-2,040	-829	300
23	충남	홍성의료원	-4,357	20,045	3,289	-12,076	-3,756	-4,181	629
24	전북	군산의료원	2,816	14,790	7,623	-8,422	-7,480	-2,760	1,865
25	전북	남원의료원*	-6,017	13,058	4,413	-13,927	-4,932	-4,815	-1,481
26	전북	진안군의료원*	-1,004	-330	77	-80	408	135	-186
27	전남	순천의료원	388	6,352	4,555	-1,825	-3,658	-309	1,162
28	전남	강진의료원*	-743	4,619	1,220	-3,522	-2,053	-1,452	-96
29	전남	목포시의료원	1,387	9,660	7,658	-1,951	-3,256	817	2,700
30	경북	김천의료원	1,142	2,416	6,574	-5,317	1,715	991	1,306
31	경북	포항의료원	919	16,549	6,857	-4,384	-2,027	149	3,583
32	경북	안동의료원*	-1,038	14,186	8,726	-3,224	-4,973	176	2,735
33	경북	울진군의료원*	1,416	52	-693	52	2,068	476	579
34	경남	마산의료원	4,794	13,445	464	-10,566	-4,792	-4,965	669
35	제주	제주의료원	352	2,144	4,560	-5,006	-5,535	-1,994	-697
36	제주	서귀포의료원	-1,618	5,566	1,310	-12,012	-7,186	-5,963	-2,788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https://rhs.mohw.go.kr/>)를 바탕으로 작성